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73

2026. 2. 9.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7. / 박윤옥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대상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202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의 4.5%인 약 13만 명이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국으로 확장하면 약 61만에 달함, 또한 이혼과 실직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 자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80

2026. 2. 9.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1. 2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 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2) 위탁시설 개요

○ 민간위탁 사후 동의 4개소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시립해밀	사단법인 세계한인회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7	230	36	'24.6.1.~'29.5.31.
시립덕송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덕송3로 30단지 내	590	99	'24.5.1.~'29.4.30.
시립에일린의뜰	서○영	다산지금로 16번길 88-1	294	64	'24.6.1.~'29.5.31.
시립한강메이플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다산중앙로 153	244	65	'24.6.1.~'29.5.31.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민간위탁 동의 누락건) 반영

○ 재계약 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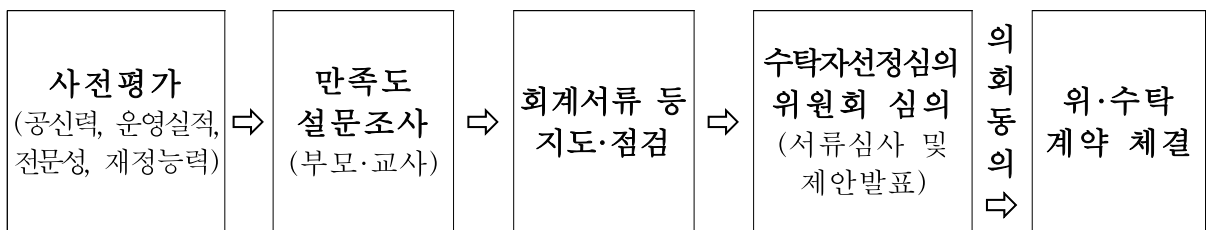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시립하임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	백봉로 32	299	69	'21.3.1.~'26.2.28.
시립목현다사랑	박○숙	화도읍 먹갓로 27번길 19-17	217	36	'21.3.1.~'26.2.28.
시립아가사랑	라○진	퇴계원읍 도제원로 96 103-106	84	19	'21.3.3.~'26.3.2.
시립오남푸르지오	김○진	오남읍 진관오남로 759번길 70	148	29	'21.6.1.~'26.5.31.

○ 재위탁 2개소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비고
시립효성솔빛길	화도읍 비룡로 33번길 25	220	41	'21.7.25.~'26.7.24.	`26.1차(예정) 수탁자심의위원회
시립덕송	덕송3로 30단지 내	590	99	<기존> '24.5.1.~'29.4.30. <변경> '24.5.1.~'26.4.30.	`26.1차(예정) 수탁자심의위원회 *계약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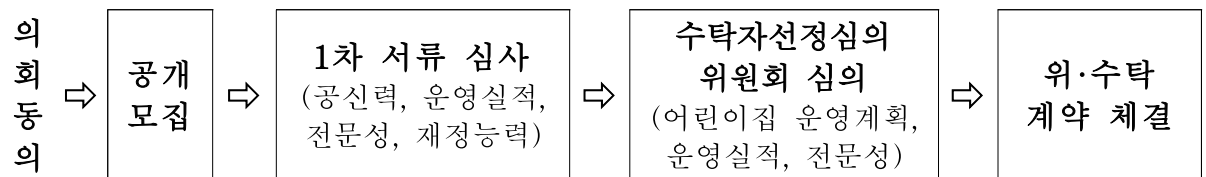
다. 수탁기관 선정방식

1) 재계약 :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

2) 재위탁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 최종결과 70점 이상, 1·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

라.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1)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2) 소요예산 : 3,134,260천원(2024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
4,145,892천원(2025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

【2024년도】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 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3,134,260	2,016,149	1,118,111
1	시립해밀	36	10	514,078	399,428	114,650
2	시립덕송	99	19	1,156,746	642,331	514,415
3	시립에일린의뜰	64	11	662,937	407,226	255,711
4	시립한강메이플	65	16	800,499	567,164	233,335

【2025년도】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 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4,145,892	2,769,595	1,376,297
1	시립하임	69	19	913,401	631,197	282,204
2	시립목현 다사랑	36	13	432,715	336,821	95,894
3	시립아가사랑	19	12	466,710	369,468	97,242
4	시립오남 푸르시오	29	10	551,621	381,657	169,964
5	시립효성 솔빛길	41	15	707,079	491,537	215,542
6	시립덕송	99	19	1,074,366	558,915	515,451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적 효율성	○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바.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

【2025년도】

연번	어린이집명	최종 결과	계 (100점)	1차 평가(40점)	2차 평가(60점)
				사전평가, 부모·교직원 만족도 조사, 회계점검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1	시립하임	적격	91.2	40	51.2
2	시립묵현다사랑	적격	81.4	35	46.4
3	시립아가사랑	적격	89.6	39	50.6
4	시립오남푸르지오	적격	96.8	41	55.8

사. 향후계획

- 2026. 2. : (재계약 4개소)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 2026. 3. : (재위탁 2개소)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

2026년 제1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중 4개소는 사후 보고 성격으로 제출되었으며, 4개소는 재계약, 2개소는 재위탁(공개모집)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시립어린이집 95개소에 대하여 사후보고 형식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음. 본 동의안은 이후 재계약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의회 동의가 누락되어 사후보고 성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행정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재계약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적적성 검토가 이행되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 재위탁 대상 2개소 중 1개소(시립효성솔빛길)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1개소(시립덕송)는 지난 1월 8일 수탁자로부터 위탁운영 해지 신청서가 제출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81

2026. 2. 9.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1. 2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6. 1. 2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5개소, 놀이체험시설 3개소) 위탁운영기간이 2026.5.26.로 만료됨에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육 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육아종합센터 운영관리 전반

○ 육아종합센터 운영관리 전반

- 어린이집·가정양육 지원(교육, 상담 등), 장난감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등

2)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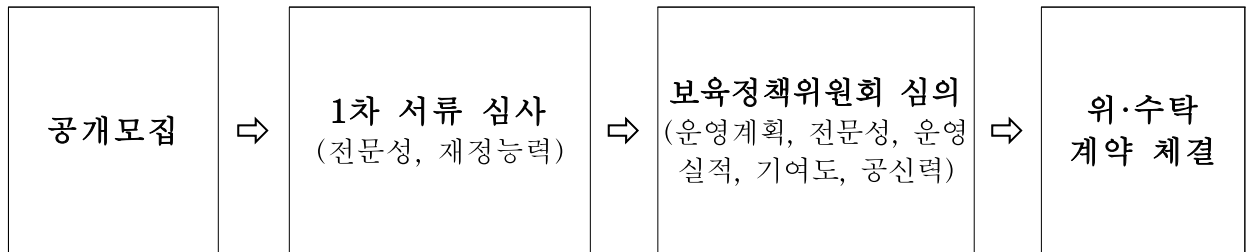
시설명		소재지		면적 (㎡)	종사자수	개관일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사무실, 교육실 시간제보육실 등		다산중앙로 82번길 106(다산동,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1,010	54	2015.07.17.
	운영 시설	장난감도서관	호평	늘을2로 67(호평체육문화센터)	122	2	2014.03.22.
			진접	해밀예당1로 96(어린이비전센터)	146	2	2015.07.17.
			별내	별내3로 308(스마트시티 통합센터)	165	2	2016.09.01.
			다산	다산중앙로 82번길 106(다산지금A5)	142	3	2022.08.16.
			화도	마석중앙로 21-8	144	2	2024.05.28.
	놀이 체험 시설 (상상 놀이 터)	북 놀이터	별내3로 308(스마트시티 통합센터)	301	4	2016.09.01.	
		아이꿈 놀이터	월문천로 43(와부도서관)	72	2	2020.01.20.	
		도르르	늘을2로 67(호평체육문화센터)	1,004	5	2021.12.07.	

3) 민간위탁 기간

○ 2026. 5. 27. ~ 2031. 5. 26. (5년)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5) 소요계산 및 산출 근거

○ 위탁비용 및 산출근거

- 2026년 예산안 반영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사무비(인건비 포함)	1,909,771	시비 100%
	재산조성비	187,229	
	사업비	393,000	
소계		2,490,000	

구분	예산액	비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공통부모교육)	34,000	도50%,시50%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배치	46,886	도30%,시50%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109,214	도50%,시50%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트 인건비 지원	57,347	도30%,시50%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999,500	국60%, 도28%,시12%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41,253	국50%, 도25%,시25%
소계	1,288,200	

6)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책임성과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전문성을 갖춘 사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인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는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
경제적 효율성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운영 및 관리 가능

구 분	검 토 의 견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운영비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총 합 의 견	<p>○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장난감 대여사업, 놀이체험시설 운영 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육아지원 기관임</p> <p>○ 육아지원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발달의 조기개입 필요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시되어, 현장성이 뛰어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 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p> <p>○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p>

7) 향후계획

- 2026. 2. :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3. : 2026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일 수탁기관이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안임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가정양육 지원, 시간제보육, 대체교사 지원 등 지역 보육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온 핵심 인프라로서, 단순 시설 운영을 넘어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정책 전달체계의 역할을 담당

해왔음. 특히 초기 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육아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바 있음.

- 이후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시설이 단계적으로 확충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 놀이·체험 공간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복수의 시설과 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확대·고착화된 상태임. 이러한 운영 형태는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능적 연계성과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남양주시 보육정책 전달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시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연계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882

2026. 2. 9.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1. 2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
-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 사업 관련 업체, 환경개선 제품 선정 및 계약체결 관련 제반 사항 운영 관리
 - 현장 관리·감독 관련 제반 사항 운영
 -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2) 위탁시설 개요

- 실내공기질 컨설팅 : 취약계층 이용시설 428개소
 - 실내공기질 측정하여 시설별 진단 및 유해인자 상관관계(외기상태와 미세먼지 농도 등) 분석
 - ※ 측정항목(6) : PM10, PM2.5, CO2, CO, 총부유세균, 곰팡이

○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 8개소

- 컨설팅을 받은 시설 중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해인자 제거를 위한 실내 환경 정비

※ 타부서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 벽면 등 곰팡이 제거, 누수 벽면 방수 처리 페인트 시공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시공 지원

3) 위탁 기간 : 11개월 (2026. 2. ~ 2026. 12.)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

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72,66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비에 위탁수수료 포함

○ 사업량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산출내역	비고
합계	436	72,660	도비 30%, 시비 70%
실내공기질 컨설팅	428	40,660	428개소 × 95,000원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8	32,000	8개소 × 4,000,000원

6)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의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이며, 법정규모 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음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위탁사무는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의 전반적인 사무이며, 기존 수탁기간과 재계약하고자 함

구 분	검 토 의 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남양주시 전역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임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무에 대하여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재)경기도 에너지환경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 가능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가 가능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공간 환경개선지원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측정 개소수, 실내환경 조성 시설수,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 성과측정 가능 (시군종합평가 기준 공급 목표 설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총 합 의 견	<p>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남양주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관에 재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p>

7)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2026. 2. ~ 12.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성과평가
 - 근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
 - 대상 : 2025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평가 완료(25.12.31.)

- 평가 결과

분 야	점검항목 (점수)	점검 내용	배 점	점 수
투입	인력 (10)	·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적정 인력 투입(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10	8
	자원 (10)	· 사업성과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10	8
과정	준수성 (10)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10	8
	노력성 (10)	·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동원 노력	10	8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50	45
활용	피드백 (10)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10	10
총점			100	87

※ 우수(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총점 70점이상인 경우 재계약 결정 가능**

8) 지도점검 결과

- 근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
- 2025. 4. 2. :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1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
- 2025. 7. 1. :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2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
- 2025. 9. 30. :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3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동일 사업에 대한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임.
-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환경관리, 돌봄 기능을

연계한 사업으로서, 기후·환경 정책과 복지 정책을 결합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한편, 재계약 동의안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87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가능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적정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90점 이상의 우수 평가에는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운영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환경설비 설치·관리와 이용자 돌봄 등 복합적인 업무가 결합된 사업인바, 시설별 관리 수준의 편차 여부, 공기질 개선 효과의 지속성, 돌봄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위탁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안건은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재계약 요건 충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향후 위탁 기간 동안 사업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과 관리·평가 체계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의안번호
883

2026. 2. 9.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6. 1. 2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6. 1. 2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바, 해당 사업을 다년간 환경 분야 업무 대행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내용

- 신청 모집 공고 및 사업장 선정
- 선정사업장의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감독
-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정산 및 결과 보고

2) 위탁시설 개요

○ 2022. 12. 31.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민간·공공시설

3) 위탁기간 : 2025. 4. 28. ~ 2026. 2. 28.(당초) / 2027. 2. 28.(변경)

○ 위탁기간 연장 사유 : 저감장치(산요 제품) 성능개선 및 검증, 저감장치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차지연

4) 수탁기관 선정방식 : 심의위원회 개최

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사업비 : 198,022천원(국비 56%, 도비 22%, 시비 22%)

○ 사업량 : 저감장치 약 63대(약 3,143대/천원)

6)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선정, 저감장치 설치 관련 관리·감독 등 사업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의 전문인력,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 추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대상자 선정, 선정사업장 관리·감독, 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을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안정성있는 사업 운영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위탁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업무처리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환경 분야 업무 대행으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총 합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함.

7)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그간 추진사항

- 2025. 3. : 의회동의(최초)
- 2025. 4. : 위수탁협약 및 사업추진(63대)
- 2025. 12. ~ 2026. 1. : 기간 연장 검토(준공 30대, 이월 9대, 불용(미신청) 24대)
 - ※ 미신청 24대 : 자부담으로 저감장치 부착, 저감장치 부착된 모델로 전체 교체 등

○ 향후 계획

- 2026. 2. ~ 12. : 사업추진 및 정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 1호 위탁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저감장치(산요 제품) 성능개선 및 검증, 저감장치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착지연의 사유로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검토결과 현 시점에서 위탁공백 발생 시 사업 진행의 중단 및 시민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최초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후 시의회의 추가동의 및 협약서 변경 계약 절차 없이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실상 연장·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2년에 가까운 연속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검사 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설명이 선행되지 않았음.

- 이는 위탁기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 없이 기간 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전 검토 원칙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 종료 시점과 위탁기간을 명확히 특정하고, 위탁기간 변경이 수반될 경우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